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51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15.

발 의 자 : 허 영 · 윤준병 · 박상혁
주철현 · 박민규 · 임호선
진성준 · 전재수 · 한민수
정일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(填補)받을 수 있으나,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,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,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4항).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4항 중 “제110조 및 제115조”를 “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“제40조제1항, 제45조제1항(제9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”은 “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”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4조(손해배상 책임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. <후단 신설></p>	<p>제34조(손해배상 책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----- . 이 경우 “제40조제1항, 제45조제1항(제9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”은 “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”으로 본다.</p>